



| 정인이법 의원발의법안

글. 법제처 법제조정법제관실

1. 배경

지난 해 10월 13일 생후 16개월된 정인이가 죽었다. 정인이는 2019년 6월 10일 3.6킬로그램으로 건강하게 태어나 생후 7개월에 입양되었으나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입양된 지 271일이 된 날에 사망했으며 사망 당시 갈비뼈들이 부러져있었고, 소장, 대장, 장간막¹⁾ 등이 찢어져 복부 전체가 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몸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췌장(이자)까지 파열되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밝힌 사망원인은 ‘외력에 의한 장기 손상’이다.²⁾

안타까운 것은 5월, 6월 그리고 9월, 어린이집 선생님, 정인이를 차량에 방치한 것을 본 이웃 그리고 소아과 원장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인이는 양부모의 학대를 계속 받다가 결국 죽었다는 것이다.³⁾

안타까운 사연은 더 있었다. 지난해 6월 1일 충남 천안에서는 44×60cm의 작은 여행용 캐리어에 계모에 의해 7시간 동안 갇혀 죽은 9살 소년도 있었다. 이 경우에도 1개월 전인 5월 5일 소년이 머리를 다쳐 병원에 오게 되었는데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병원에서는 자체 위원회를 열어 아동학대혐의로 신고했으나, 그 때에도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한달 뒤 9살 소년은 캐리어에서 숨을 쉬지 못하고 죽었다.

1) 장간막: 장(腸)을 체벽에 고정시키는 복막의 일부
2) 국민일보 2021. 1. 3. 기사, 한국경제 2021. 1. 4. 기사 등
3) 국민일보 2021. 1. 5. [한마당] #정인아-미안해



그런가 하면 지난해 5월 29일에는 경남 창녕에서 2년간 학대를 당한 9세 소녀의 목숨을 건 탈출이 있었다. 계부와 친모는 평소 소녀를 쇠사슬로 채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고 밥을 먹거나 화장실에 갈 때만 풀어줬다. 소녀는 잠시 쇠사슬이 풀린 틈을 타 4층 높이의 집 베란다에서 옆 집 베란다로 건너가 탈출했다. 인근 주민에게 발견된 소녀의 몸은 멍들어 있었고 손가락에는 화상 흔적이 있었다.

지난해 9월 14일 인천에서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8살, 10살 형제가 보호자 없이 자택에서 라면을 끓이다가⁴⁾ 화재가 발생하여 형과 동생이 중태에 빠져 동생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기 전 두 형제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3번이나 접수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인천가정법원에 보호자와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저항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최악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핵심인 기본 형량이 현행법상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국민의 법감정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겠다.⁵⁾

그리고 현행법은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 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아동은 아동학대행위자가 무서워 분리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시의적절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아동이 사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⁶⁾

4) 회복된 형의 진술에 따르면 라면을 끓이다 화재가 난 것은 아니고 가스레인을 켜고 화장지를 가까이 가져다 대다 큰불이 난 것으로 밝혀졌다.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3호, 제393호) 검토보고서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3호, 제2126호, 제2210호, 제2637호, 제2680호, 제3076호) 검토보고서

아동학대행위자는 가정으로 복귀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을 강화하여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필요적 병과로 전환하고, 추가적인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서로에 대하여 동행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나, 동행 요청 자체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최초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서로에게 동행을 요청하지 않아 해당 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초 신고 시에 즉시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대처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행법⁷⁾상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19구급대원 및 응급구조사, 의료인, 유치원·초중등 학교의 교직원 등이며, 이들은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⁸⁾ 일반국민의 신고는 임의적 신고로 규정되어 있다.

국회는 지난해 천안 계모 의붓아들 캐리어 사망 사건,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아동학대 관련 법안을 발의하거나 계류 중이던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표적인 것이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으로 의료기록을 통해 학대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군 아동들을 발굴하고 관계기관이 원활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올해 3월에 시행되어 정인이의 아동학대를 막지는 못했다.

7) 2020. 3. 24. 개정, 2020. 10. 1. 시행 법률 기준

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25. (생 략)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을 1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아동학대 방지 관련 입법을 마련하고자 힘쓰고 있다.

2. 발의 현황

국회에는 1월 4일 기준으로 90여건의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에 관한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올해 들어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대아동의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일명 '아동학대 무관용법'을 발의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도록 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와 수사에 착수토록 했고, 지자체 조사과정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또 아동학대행위자의 진술 및 자료제출 거부를 방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이 지난해 발의한 '아동학대방지3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대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가해부모와 아동을 긴급히 분리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지자체장이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하는 즉시 분리·보호법(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아동학대 범죄자가 또다시 학대행위를 하는 누범인 경우 가중 처벌법(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논의 및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아동복지법」 주요 의원발의안 내용〉

의안명	의안번호	발의자	주요내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1.)	1266	김상희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자료 활용 · 지자체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 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 의뢰 ·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퇴소조치 이후 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문상담·교육 등을 거부·방해 시, 가정복귀 취소 가능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2.)	1337	김윤덕	· 기본이념과 책무에 가정이나 가정 복귀에 대하여 명시한 부분을 변경,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아동의 가정 복귀가 아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담과 지도 병행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3.)	1444	서영교	· 원가정 보호 원칙 삭제(안정된 가정환경이나 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개정하여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규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3.)	1448	이만희	·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대상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을 포함 · 민간사업자에게도 교육 등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노력 의무 부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7.)	1597	정희용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시·군·구 통합 설치운영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아동이 가정복귀가 아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7.)	1601	정춘숙	· 아동학대의 정의에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동을 구호하지 아니하거나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해 아동을 비난·회유·협박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것 포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9.)	1730	김정재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아동의 가정 복귀를 결정하는 경우나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신고를 청구할 때에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 · 아동학대 후 사후관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처벌 ·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을 의무화 · 시·군·구 통합 설치·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9.)	1734	양정숙	· 상담 보호조치 처분을 포함한 각 보호조치 처분이 종료된 후 진행할 사후조치의 최저 기간과 최저 현상 점검 회수를 정함 · 원가정 외의 장소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관하여서는 반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처도록 함 · 사후관리를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권을 규정 · 사후관리를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 등을 거부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아동복지법」 주요 의원발의안 내용〉

의안명	의안번호	발의자	주요내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16.)	2068	조명희	·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아동학대 전문의료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조치한 상담·치료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가정 복귀를 결정 ·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17.)	2080	조명희	·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대상을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까지 확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17.)	2134	고영인	·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된 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도록 개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17.)	2155	정청래	·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전 친권자 및 피해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보장, 양육환경 개선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의무화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17.)	2157	정청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아동학대 전문의료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조치한 상담 및 치료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조치 ·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상담·교육 등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고, 이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상담·교육 등에 참여하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21.)	2211	최혜영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등의 사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처벌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된 부분을 삭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8. 3.)	2640	신현영	· 아동에 대한 폭력이나 가혹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 ·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이를 처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8. 3.)	2644	신현영	· 아동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8. 4.)	2682	박상혁	· 피해아동에게 제공하는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에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8. 5.)	2705	남인순	·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시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8. 5.)	2732	남인순	· 보호자의 책무에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

〈「아동복지법」 주요 의원발의안 내용〉

의안명	의안번호	발의자	주요내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8. 18.)	3009	양향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피해아동이 다른 시·도 또는 시·군·구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 피해아동과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아동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8. 20.)	3073	고민정	·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합하여 아동학대 사전 발견, 재학대 방지, 사후지원 단계까지 관계 기관이 관련 정보를 공유·연계하도록 '국가아동학대방지시스템'을 구축·운영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8. 26.)	3303	강민국	· 보호자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방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 ·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9. 1.)	3420	강선우	·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지 아니하고 별도 설치 ·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9. 22.)	4112	김미애	· 아동이 가정에서 목격하는 가정폭력 등 간접적인 폭력 또한 학대행위임을 명확히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9. 29.)	4371	허종식	· 아동학대 피해 의심 아동 즉시 분리할 수 있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0. 27.)	4691	이수진	· 근로자가 피해아동의 가족이거나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상담·교육이나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3.)	6095	권은희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필수근무기간을 정하고, 배치기준을 마련하며, 사례관리 거부 시 이를 처벌 · 피해아동은 즉각 분리가 가능 · 피해아동 보호 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충분히 확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1. 4.)	7141	권철승	·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 가정 방문의 주기 및 지원하는 지도·관리의 내용·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1. 5.)	7174	김병욱	·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아동의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강검진 수검을 받지 아니한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여부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1. 5.)	7176	김병욱	·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

※ 1266, 4371은 2020. 12. 2. 본회의 통과하여 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공포되어 2021. 3. 30. 시행



〈아동학대처벌법 주요 의원발의안 내용〉

의안명	의안번호	발의자	주요내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6. 23.)	895	서영교	·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21.)	2210	최혜영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서로에 대하여 반드시 동행을 요청하도록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8. 3.)	2637	신현영	·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된 현장 뿐 아니라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8. 4.)	2680	박상혁	·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8. 20.)	3076	고민정	· 전치 2주 이상 상해 또는 2회 이상 학대현장 발견 시 즉시 분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9. 1.)	3409	강선우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9. 9.)	3659	서영교	·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뿐만 아니라 사건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서도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게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9. 18.)	4038	정성호	· 현장출동을 한 경우 아동학대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출동결과 및 조사결과에 관한 보고서 작성, 이를 해당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관할청에 송부, 지자체장과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보고서를 서로 송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0. 28.)	4719	김미애	·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시 시·도·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0. 29.)	4759	고영인	· 현장출동 시 수사기관 및 아동학대전문가 동행 의무 부여 · 응급조치기간을 168시간으로 연장,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횟수 제한을 없앴 · 피해아동의 응급조치결과보고서와 아동학대행위자 임시조치 이행상황을 보육기관, 학교 및 관할청에 송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5.)	4993	강기윤	· 사법경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단독으로 출동한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현장출동의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서로에게 알림 ·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이 종료한 경우 법원과 지자체 간 소통을 법에 명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24.)	5670	이채익	· 아동학대 관련 전문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을 포함 · 아동학대사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형벌과 수강명령을 병과

〈아동학대처벌법 주요 의원발의안 내용〉

의안명	의안번호	발의자	주요내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18.)	6714	양금희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누범가중 규정 및 재범여부 조사 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28.)	6964	김홍걸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거부 시 처벌 강화(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아동학대 관련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를 포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28.)	7163	노응래	·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 아동학대범죄 법정형 상향(아동학대치사 5년 → 10년, 아동학대중상해 3년 → 6년) · 아동보호 이행실태 조사 등 법원의 의무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1. 5.)	7164	김성원	·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 조사·수사 즉시 착수 · 지자체와 수사기관 현장출동 동행 의무화 · 지자체 조사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참여 의무화 · 아동학대 행위자의 진술 및 자료제출 거부 방지 · 응급조치시간 확대(72시간 → 168시간) · 1년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과정에서 재학대 박생 우려 시 아동 즉시 분리 조치 · 학대행위자 현장조사 거부 시 처벌 강화 · 수사기관 등 응급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1. 5.)	7169	김병욱	· 사법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피해가 확인되거나 학대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따른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1. 5.)	7175	강훈식	·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동행을 요청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동행하지 않도록 함 · 예외적으로 동행하지 않는 경우 당일 아동학대 신고접수 내용 및 조치 결과를 상호 통지하도록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1. 5.)	7178	김정재	·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보호처분 이행 등과 관련한 법정 의무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1. 5.)	7179	김병욱	· 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신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1. 5.)	7182	김용판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음 ·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여 학대행위자와 서로 분리



〈「민법」 주요 의원발의안 내용〉

의안명	의안번호	발의자	주요내용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6. 11.)	344	신현영	· 친권자가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동학대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막고자 징계권 규정을 삭제(안 제915조 삭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6. 11.)	381	전용기	· 아동학대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본법인 「민법」 상에서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필요 시 훈육의 의무는 부여하되 그 과정상에서 각종 학대행위는 이뤄지지 않도록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6. 12.)	427	황보승희	·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되 체벌이 아닌 훈육을 하는 방향으로 친권자의 관리의무를 개선하고, 삭제된 조문 중 '감화 및 교정기간 위탁' 부분의 내용을 거소지정권의 내용에 반영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1.)	1269	양이원영	· 징계권 규정 삭제,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 명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8. 7.)	2807	진성준	· 징계권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0. 15.)	4530	정부	· 징계권 삭제 ·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이 대부분 「소년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관한 현행 규정을 삭제

〈그 밖의 주요 의원발의안 내용〉

의안명	의안번호	발의자	주요내용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1. 5.)	7167	강훈식	· 특정강력범죄에 아동학대범죄를 추가 ·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가능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1. 5.)	7171	강훈식	· 사후관리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사후관리의 내용에 아동학대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며, 양부모의 경우 사후관리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가정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

3. 향후 전망

여야는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을 1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정인이 사건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 등이 세차례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 조사단계에서 피해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점에서 학대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아동학대 신고 시 아동과 학대부모를 반드시 분리 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와 격리해 조사하고 신변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규정, 사법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이 사는 곳을 드나들며 피해 아동을 우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학대 형량을 높이는 법안들이 제출되었으나, 해당 법안들은 형법상 형량과 적지 않은 충돌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여행용 캐리어에 갇혀 죽은 소년, 쇠줄에 묶여 살다 죽음을 무릅쓴 탈출로 아동학대에서 벗어난 소녀 등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방지 및 예방하기 위해 제도와 법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왔고 많은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다른 현안에 밀려 국회에서 신속한 심사와 통과를 기대하지 못하다가 정인이의 죽음을 계기로 다시는 제2의 정인이가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공분과 결의가 이번에는 국회에서 열매를 맺어 관련 법률들이 통과되어 학대를 받는 아동들이 신속하게 보호 조치되고 아동학대가 예방되는 사회를 기대해본다.